

교직과정운영규정

[제정 1999.3.1, 최종개정 2026. 2.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광주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인성과 교육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미래형 교사양성 <개정 2021. 7. 16.>

제2조의2(교육목표) 교직과정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7. 16.>

1. MAUM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기른다.
2.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학생에 대한 이해능력과 실제 지도기법을 기른다. <개정 2023. 7. 24.>
3.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문지식의 적용, 활용, 융합이 가능한 현장실무능력을 기른다.
4. 삭제 <2023. 7. 24.>

제3조(교직과정 이수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할청으로부터 설치 승인된 학과에 대하여 2학년중 소정기간내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5., 2016. 3. 1.>

제4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인성, 적성 및 성적을 고려하여 교육부에 승인된 인원 범위 내에서 2학년중에 선발한다. <개정 2008. 12. 5.>

② 삭제 <2021. 7. 16.>

제4조의2(교직과정 이수의 포기 및 추가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중도 포기 및 제적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3학년 1학기전까지는 전년도 신청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결원을 추가로 선발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

제5조(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교직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학년도에 따라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1」과 같으며,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3. 1.>

② 삭제 <2008. 12. 5.>

제5조의2(중복인정 학점 및 검정기준)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과목명이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의 전공과목을 결합한 과목의 경우 특수교육 및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으로 최대 18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3.]

제6조(설치학과 및 표시과목)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및 해당 학과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12. 5.>

제6조의2(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명과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명이 다르거나, 하나의 과목을 둘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할 경우 교과내용의 교수요목이 부합함을 증명하는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통해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지정한 기본이수과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개정 2008. 12. 5., 2021. 7. 16.>

②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분리한 과목 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개정 2021. 7. 16.>

③ 교원양성학과 담당교수는 교직필수교과목의 경우 기본이수교과목의 교수요목이 부합하도록 수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6.>

제7조(교육실습) ① 대학에서 학교현장실습 이론교육(사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상황 시,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총장 또는 실습협력학교의 장이 간접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6.>

②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은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과 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초과시, 직접이나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이수 가능) 다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7. 16.>

③ 학교현장실습은 한 학기에 집중하지 않고, 학기 또는 학년 별 분산 실시, 학생별 강좌가 없는 요일 활용 실시, 현장교사와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6.>

제7조의2(교육실습 지도비)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실습지도교수 지도비는 학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6.>

제8조(성적) ① 사범계열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 무시험검정 성적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 12. 5., 2013. 3. 1.>

② 평균성적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별도로 산출하되, 복수·부전공 무시험검정의 경우 면제받은 과목은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 취득 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6.>

제8조의2(교직 적·인성 검사) 사범계열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직 적·인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1., 개정 2023. 7. 24.>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1회 이상
2. 2013학년도 3월 1일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제목개정 2023. 7. 24.]

제8조의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사범계열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1.]

제8조의4(성인지교육) ①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교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사범계열 : 4회 이상

2. 2021. 2. 9.기준 2개학기 초과 재학생: 2회 이상

- ②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기준은 성인지 교육 주요내용 4가지 항목(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6.]

제8조의5(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절차)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따른 요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졸업여부(졸업유예자는 대상에서 제외)
2. 학위등록 여부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등재여부(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4. 성적기준 충족여부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여부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기준 충족 여부
7. 성인지 교육 실시 기준 충족여부
8. 각종면허증(보건교사, 영양교사) 및 자격증 취득여부

[본조신설 2021. 7. 16.]

제8조의6(교원자격검정 서류 편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서류 편철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 학적부 사본
3.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관련서류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관련서류
5. 성인지교육 이수관련 서류
6.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서류
7. 자격증 사본(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본조신설 2021. 7. 16.]

제8조의7(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성범죄 이력관련 서류)를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각 호와 같이 확인해야 한다.

1. 성범죄이력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대학소재지역 경찰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중독여부관련: 무시험검정신청자가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확인 후 명단을 원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6.]

제8조의8(교원자격 포기자 학위취득) 예비교원이 교직 적성이 맞지 않아 자격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 실습 교과목 등을 포함하여 교직이수 교과목 대신 학칙 51조에 의거 졸업 이수 요건이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6.]

제8조의9(편입생 학점인정) ① 전공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 전공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기본이수과목의 경우 이수과목의 이수구분 표시가 전공이 아닌 경우라도 인정할 수 있으나 시험검정 합격기준에서 요구하는 전공 전체학점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다.

②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적대학에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한다.

③ 교직 편입생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입생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23.]

제9조(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중등학교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특수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졸업 마지막 학기말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5., 2012. 9. 1.>

제9조의2(복수전공) ① 교직과정의 복수전공 신청자격은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범위는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또는 전공으로 한다. <개정 2008. 12. 5.>

③ 복수전공 신청시기는 2학년 말에 선발하며 승인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범계학과 : 학과 입학정원의 100%이내

2.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 승인인원의 2배수이내 <개정 2008. 12. 5., 2012. 8. 1.>

④ 삭제 <2008. 12. 5.>

⑤ 삭제 <2008. 12. 5.>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교원양성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 12. 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하되 당연직으로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직과정센터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 12. 5., 2012. 8. 1., 2016. 3. 1.>

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외부인사 및 졸업생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2. 5., 2021. 7. 1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원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개발,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4.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8. 12. 5.>

6. 삭제 <2008. 12. 5.>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아교육과의 경우 사범계로 제7조(성적)을 충족하지 않아도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증 부여함.
3. 간호학과의 경우 교직과정 설치 승인 없이 2001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며, 교직 과목(20학점)과 제8조(성적)을 충족하지 않아도 면허증을 취득하면 양호교사 자격증 부여함.
4. 경과조치
 - ① 1998학년도 설치 승인된 학부(과) 및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1999학년도 설치 승인 학부(과)는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별표 2-2」의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에 해당되는 교과목 5과목(14학점)이상을 적용한다.
 - ② 1998학년도 설치 승인된 학부(과) 및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는 1999학년도 입학생까지 「별표 2-1」의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3과목(9학점)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① 유아교육과의 경우 사범계로서 제8조(성적)를 충족하지 않아도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 ② 간호학과의 경우 교직과정 설치 승인 없이 2001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며, 교직과목(20학점)과 제8조(성적)를 충족하지 않아도 면허증을 취득하면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 ③ 1998학년도 설치 승인된 학부(과) 및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1999학년도 설치 승인 학부(과)는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별표 2-2」의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에 해당되는 교과목 5과목(14학점)이상을 적용한다.
 - ④ 1998학년도 설치 승인된 학부(과) 및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는 1999학년도 입학생까지 「별표 2-1」의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3과목(9학점)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6학년도 3학기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2005학년도까지 사범계학과 입학자와 2004학년도까지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자

의 복수(부)전공 인정인원은 총장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9조의1(복수전공) 2006학년도 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개정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제8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이 남은 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학생은 제외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개정 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제8조의4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개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8조의5 개정 규정은 2021년6월23일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교원양성과정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이 규정 개정 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자격종별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 2021. 7. 16.>

□ 자격종별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13~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재입학자 포함)

구 분		세 부 사 항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보건의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영역	- 12학점(6과목 이상)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 영, 생활지도,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 6학점(3과목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 또는 생활지도 및 상담(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4주)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60시간 이상)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 은 제외
성인지교육		- 일반대학 교육과 : 4회 이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단, ‘21.2. 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개 학기 초과하는 자부 터 적용 ‘21.2. 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전공과목 75점/100점 이상, 교직과목 80점/100점 이상)
기타		- 보건의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구 분		세 부 사 항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단,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추가로 포함 ※ 교과교육영역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교직 과목 (22 학점 이상)	교직이 론 영역	- 12학점(6과목 이상)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 양	- 6학점(3과목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교육실 습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4주)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60시간 이상)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교육		- 일반대학 교육과 : 4회 이상 - 일반대학 교직원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단, '21.2. 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개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 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전공과목 75점/100점 이상, 교직과목 80점/100점 이상)
기타		-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별표 1] 자격종별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 2026. 2. 23.>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202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구 분		세 부 사 항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단,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추가로 포함 - 특수(초등,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론 필수이수 ※ 교과교육영역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교직 과목 (22 학점 이상)	교직이 론 영역	- 12학점(6과목 이상)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와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 양	- 6학점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1~2학점 이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교육실 습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4주)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60시간 이상)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 단, 2016. 3. 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교육		- 일반대학 교육과 : 4회 이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단, ‘21. 2. 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개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 2. 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전공과목 75점/100점 이상, 교직과목 80점/100점 이상)
기타		-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별표 2】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개정 2026. 2. 23.>

- 교육부고시 제2025-10호(2025. 3. 4.)

학과/전공	설치 년도	표시 과목	교육부 고시과목 및 분야	비고
유아교육과	1997	-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권리와 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 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사범계
초등특수교육과 / 특수교육과 (초등특수 교육전공)	2003	-	<공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 학, 시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적장애학생교육,지체장애학생 교육, 중도. 중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자폐성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생교 육, 학습장애학생교육, 건강장애학생교육	사범계
		-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초 등과학,초등체육,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 실과,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 안전교육	특수교육영역 (공통)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할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중등특수교육과 / 특수교육과 (중등특수 교육전공)	2005	-	<공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 학, 시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적장애학생교육,지체장애학생 교육, 중도. 중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자폐성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생교 육, 학습장애학생교육, 건강장애학생교육	사범계
		미술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 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 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 사(한국, 융양, 서양미술사 포함)	

학과/전공	설치년 도	표시 과목	고시과목 및 분야	비고
간호학과	1997	-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 실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 실습, 학교보건 및 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 실습, 정신간호학 및 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학교보건 및 실습과목에 학교 안전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것
미용과학부(과)	1999	미용	미용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미용, 네일미용, 화장품학, 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또는 생리학해부학), 소독 및 전염병학 (또는 위생학)	
상담심리학과	2006	-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상담실습 필수이수
식품영양학과	2006	-	(1) 영양교육및 상담실습 (2)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3) 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5) 식품학, 조리원리 및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과목 이상 (4)(5)에서 각 1과목 이상
반려동물보건학과	2023	동물자원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완동물, 축산물가공, 농업정보, 동물사료, 동물생명과학, 동물영양학	